

【 목 차 】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hypertube) 개발 및 운영 로드맵 수립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3. 3.

국 토 교 통 부 철도안전정책과

I. 과업 개요.....	1
II. 과업의 수행지침.....	5
III. 입찰참가 자격 및 계약방법.....	10
IV.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11
V.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14
VI. 예정공정표.....	18

붙임 : 제안서 양식(서식 1 ~ 서식 7)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hypertube) 개발 및 운영 로드맵 수립 연구

2. 추진 배경 및 목적

- 세계적으로 미래 초고속 이동수단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경쟁* 심화 따라 선도기술 장벽 회피**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기반 마련 필요
 - * (미)500m 하이퍼튜브 유인 시험 성공(172km/h, '20), (EU)2.5km 시험선 건설 추진, (일)500km/h급 자기부상열차 노선 건설중('27 도쿄-나고야 구간 개통 예정)
 - ** KTX의 경우 세계 4번째 고속철도 개발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입장벽으로 수출 곤란
- 2022년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결과 하이퍼튜브 사업의 연구개발부터 향후 운영계획을 포함하는 마스터플랜 마련 필요성 제시

【 과기부 총괄위원회 주요 의견 중('23.1.10) 】

□ 검토결과 : 선정

-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근거로 하며, 「국가 R&D 혁신도전성 강화 방안(안)에 따른 혁신도전 프로젝트로 선정
- 다만, 사업 추진 이전 국가인프라, 민간역량, 수요노선, 경제성 등의 **종합 분석을 통해 하이퍼튜브 사업의 마스터플랜 마련을 병행할 필요**
-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초고속 철도망 확충 목표에 따라 초기 기반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며, 국가 R&D 투자 방향에 일부 부합

<연구결과 활용방안>

- (정책) 하이퍼튜브 사업 추진 정책 수립시 기본 참고자료로 활용
- (단기계획) '24년 업무계획 반영 및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국가R&D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중장기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차기 상위 법정계획 수립과 연계
- (홍보) 미래 교통수단 및 국가성장모델로서의 하이퍼튜브 비전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국내 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중심으로 수행
 - 단, 해외 주요국가의 최신 기술개발 현황 및 정책 동향 등도 포함하여 검토
 - 필요시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 비전 및 정책방향 제시 가능
- (시간적 범위) 2024~2043년을 목표로 함
 - 단, 추진전략 및 이행과제는 기술성숙도를 고려한 단계적 기술개발 및 향후 수립 예정인 차수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고려하여 제시
 -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제6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31~'40) 등
 - 연구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22년을 기준으로 하되, 구득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
- (내용적 범위) 국내의 현황 분석을 통한 하이퍼튜브 추진전략 및 이행과제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4. 주요 과업내용' 참조
 -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관련 기술 지원 포함

4. 주요 과업내용

- 국토교통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국토교통 분야의 및 현황 분석 및 주요 사회적·정책적 이슈 도출
 - (국토 균형발전) 도시 집중화와 지방소멸 가속
 - (탄소중립 실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교통분야 감축 목표 및 현황
 - (인구구조 변화)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
 - (미래 교통수단 등장) 미래 교통수단 요구특성 및 비교

□ 하이퍼튜브 관련 국내의 정책 및 개발 동향 분석

○ 국내의 기술개발 및 정책 동향 등 분석

- (국내) 관련 기술축적 현황 및 개발역량 분석
- (해외) 최신 기술개발 현황 및 정책 동향 분석

□ 미래사회 초고속철도(하이퍼튜브) 역할 및 효과 분석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하이퍼튜브 역할 및 효과 분석

- (국토 균형발전) 지역 불균형 완화 효과 등
- (탄소중립 실현) 교통분야 탄소중립 기여도 등
- (인구구조 변화)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국가 생산성 제고 효과 등
- (미래 교통수단 등장) 교통 주도 국가 신성장 견인 효과 등
- (경제성 분석) 상용화 단계의 경제성 분석 의 연구 단계별(1~3) 지역과 급효과 분석 및 향후 활용방안 모색 등

□ 추진전략 및 이행과제 제시

○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의 정책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초고속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전략(안)
- 하이퍼튜브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략(안)
- * 국내 상용화 시 추가 2개 노선(유사시 대비 보조선) 요구에 따른 총 개략 건설비용 산출필요시
- 형식승인 등 제도 기반 마련(안)

○ 추진전략별 이행과제 도출

- 현황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추진전략별 맞춤형 이행과제 도출
- 이행과제별 수행시기 및 수행주체 등 세부 이행계획(안) 마련

○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추진전략 및 세부이행과제와 향후 수립 예정인 차수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간 연계성·추진시기 등을 고려한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추진 로드맵(Roadmap) 제시
-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제6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31~'40) 등

○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제시

- 필요시 중점 추진전략 실현을 위한 계획 및 사업 개편방안, 추진체계 및 조직 개편방안, 법·제도 개선방안 등 구체적 정책수단을 포함하는 세부실천과제 및 정책제언 제시

□ '22년 제4차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 예비 타당성조사 진행 시 지적되는 문제점, 개선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5.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6. 소요 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7.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과업의 수행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 가.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변경하되 감독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나.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 계획에 의거 매월 월말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과업의 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라.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에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마. 직접경비항목에 대해서는 준공 10일전에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바. 기타 과업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나. 과업의 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된 경우
- 다. 발주자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 라. 기타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3.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 가. 보고서 내용은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어 내용에 불명확성과 논리적 결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보고서에 수록되는 모든 자료(통계, 분석, 도표, 사진, 참고 등)는 출처와 근거가 그 자료 하단 또는 자료가 속한 페이지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또한 본 과업에서 새로이 생성된 자료에 대해서도 근거 및 작성 책임자의 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 다. 수급자는 최종 연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15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한 다음 인쇄토록 하되, 발주처로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보고서의 표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 라. 최종 보고서는 10질 백상지에 국한문 및 영문을 혼용하여 인쇄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병기하며 모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마. 수급자는 과업완료와 동시에 다음에 명시한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구 분	제 출 시 기	제 출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 후 15일 이내	10부	세부과업수행계획 포함
최종보고서(안)	준공 15일 전	10부	
최종보고서	준공계 제출 시	100부	최종보고서(CD포함)

바. 수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용역 완성시 전부 납품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추가 인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성과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편찬 발간하여야 한다.

아. 연구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록을 발간토록 한다.

4. 보안 대책

가.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 제906호, '17.7.13)”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부에 전량 납품한다.

- 7 -

카.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타.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삭제)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파.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성과품 수량을 초과하여 성과품을 발행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하.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9 -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규직원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아.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자.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차.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8 -

III.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10 -

IV.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기술평가는 동 계약예규 제7조6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
 - 기술·가격평가의 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나. 평가 기준

○ 기술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제안기관 일반현황 (30)	기관평가	-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	20	계량평가
	입찰참가 제한 등 정계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정계(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등 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10	"
과업수행 부분 (70)	제안서 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5	비계량평가
	과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성성 및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	25	"
	과업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25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5	"
	연구조직 구성	-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절성	5	"
기타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5	"	
계			100	

* 기술평가 배점(100점)은 8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11 -

2. 협상 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대상 순위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 가격평가점수)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 순으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한다.

나. 협상 절차 및 내용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

-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13 -

- 계량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관련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20점)

구분	5인 이상	4인	3인	2인 이하
점수	20	19	18	17

- * 철도 관련 분야 전공 석사·박사, 기술사급 연구인력 보유수
- * 증빙서류 제출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정계횟수(10점)

구분	0회	1회	2회	3회 이상
점수	10	9	6	2

- 비계량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분	배점 (A)	평가정도					
		매우우수 (점수=A×1)	우수 (점수=A×0.8)	보통 (점수=A×0.6)	다소 미흡 (점수=A×0.4)	미흡 (점수=A×0.2)	
과업수행 부분	제안서 개요	5	5	4	3	2	1
	과업 접근방법	25	25	20	15	10	5
	수행계획	25	25	20	15	10	5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5	5	4	3	2	1
	연구조직 구성	5	5	4	3	2	1
기타	5	5	4	3	2	1	

-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다. 제안설명회 개최 및 평가

- 제안설명회를 개최(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하여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용역책임자(또는 용역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제안내용을 구두로 설명(PPT 활용 가능)하고 질의응답 실시

*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서만으로 평가

- 제안설명회 이후 평가위원별로 평가항목별 평가

- 12 -

V.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용지, 표지포함 20매 이내 아래한글로 작성하며 좌측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한 경우 A4 크기로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고,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파일 제출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14 -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구성

구분	작성지침	비고
1. 표지	○ 과제제안서	서식 제1호
2. 제안서 내용	○ 제안서 개요	
	○ 과제접근방식, 과제수행계획,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연구조직 구성 등	
3. 일반현황	○ 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제2호
	○ 관련 연구분야 인력 현황	서식 제3호
	○ 참여 인력의 전공(대학교 또는 대학원) 및 경력(출발표)	서식 제4호
	○ 참여인력의 개인별 경력사항	서식 제5호
4. 별첨자료	○ 정성참고자료	

3. 제안 유의사항

○ 제안내용 보장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다만, 발주기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계약조건

- 제안사업자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

- 15 -

○ 기타 과제수행시 유의사항

- 제안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연구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제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에는 프로젝트 책임자(PM) 등 주요 용역수행 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주요 용역수행 인력을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여야 함
- 제안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자료는 본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음
- 용역수행자는 검수과정에서 발주자가 용역수행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불량 부분으로 간주하여 전체 용역에서 차지하는 해당 불량부분의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감액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 연락처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5)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6)

- 17 -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제안비용부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한 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함

○ 제안서 설명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저작권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자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안서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국토교통부는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 시 국토교통부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기술·컨텐츠·산출물(최종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국토교통부에 있음

- 16 -

VI. 예정공정표

구분	비율 (%)	착수일로부터 180일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국토교통 현황 및 문제점 진단	10	5	5					
2. 하이퍼튜브 관련 국내외 정책 및 개발 동향 분석	20	10	5	5				
3. 미래사회 초고속철도(하이퍼튜브) 역할 및 효과 분석	30	5	10	10	5			
4. 추진전략 및 이행과제 제시	40		5	10	15	5	5	
과업진도율 (%)	실적	100	20	25	25	20	5	5
	누계	100	20	45	70	90	95	100

- 18 -

참여인력의 개인별 경력사항

성명	(인) 소속	직책	연령	세
전공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전공	학위		
주요경력				
참여실적				
수행연구용역명	용역기간 (년 월~년 월)	용역금액	담당업무	발주처

- ※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가 별도 요청 시 각종증빙자료(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해야 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 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은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시 첨부
 -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0000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계반 업무내용**에 대하여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